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안교육기관의 중립성 확보 등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97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대안교육기관의 중립성 확보	3
2.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의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요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해야하는 교육감 등은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법령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 및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이 법에 규정된 등록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안교육 기관의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운영에 대해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신원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안교육기관의 중립성 확보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록 취소, 경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3(대안교육의 중립성)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생략)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사회</u>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4. ----- <u>교육의 중립성 및 사회</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 -----

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② · ③ (생략)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생략)

<신 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illegible]

1. ~ 5. (현행과 같음)

6. 제3조의3에 따른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여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경우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

----- . 다만, 대안교육
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경비
지원 및 경비 지원의 중단 내용, 기
간, 정도 등에-----.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설립
· 운영 등록을 한 이후에도 등록 요
건 또는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주기, 방법 등 점
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_____
 _____감독 및 제2항에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른 점검을----- -----제1항 및 제2항과----- -----. ④ 제3항에----- -----.
---	---

나. 검토의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²⁾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³⁾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2025년 9월 기준 총 267개 기관이 등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록되어 있으며, 2024년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재학생 수는 총 11,772명임.

<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10	7	8	13	11	2	1	7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6	11	12	7	9	267

자료: 교육부, '25.9. 기준

<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초중(통합)	중·고(통합)	초중고(통합)	기타	합계
학생 수(명)	2,819	1,820	1,797	616	1,235	2,796	689	11,772

자료: 교육부, '24.7. 기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달리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생태·인성·예술 교육 등에서 더욱 유연하고 독립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5. 4.)	267개 등록 (’25. 9.)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조사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함.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시도별 상이
	수업료	시도조례 또는 자율로 정함	자율로 정함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보호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⁵⁾, 최근 일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 이에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중립성의 대원칙을 규정하고(안 제3조의3),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 군사훈련...교회 대안학교 탈출하려니 손가락 던진 부목사('25.9.1. 한국일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불가 및 취소 사유와 경비 지원 중단·배제 사유로 추가하며(안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의2),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이후에도 등록 및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중립성 준수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이나 교육감·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학부모·학생도 편향적 정치·이념 교육을 문제 삼을 때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규범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나아가 교육의 중립성 위반을 등록 제한 및 취소, 경비 지원의 중단·배제 사유로 구체화함으로써,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조치와 재정지원 여부에 연동되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대안교육기관이 스스로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됨.

또한 정기적인 등록 요건 점검을 법제화하여 중립성 위반 소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대안교육

기관의 운영 자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음. 대안교육기관은 그 성격상 공교육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우리나라 법체계도 일반적인 초·중등학교 외에 대안학교를 규정함과 더불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안교육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등록 취소 및 경비 지원 배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 설립 본래의 취지인 교육의 자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공·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의무 이행을 확보할 실질적 수단이 존재하는 반면, 대안교육기관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임에도 폭넓은 교육과정 자율성, 완화된 교원 자격 등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함
- 교육기본법상 중립성 준수 의무를 「대안교육기관법」에 명시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일선 담당자가 등록 심사, 지도·감독 과정에서 직접 원용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규범을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 다만,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일부 수정 필요
- 한편, 중립성 준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 선언적 규범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 조항에 교육의 중립성 위반 사유를 명시하여 실질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처분 근거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일선 감독기관의 어려움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은 등록 시점에 일회성으로 충족할 요건이 아니라, 기관이 등록되어 운영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임. 현행법

에 따라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는 지도·감독할 수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 당국이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에 있어 실질적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주기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시·도교육청 (대구교육청): 신중검토 -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조항 대통령령 개정 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집행 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전남교육청): 신중검토, 일부수정 - 제3조의3 및 제5조 개정안 동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해당 사유로 등록 취소 시 행정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7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7조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법 조항에 따라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므로 조례로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일부 수정(후단 삭제) (제주교육청): 일부수정 -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감에 있으므로 등록 요건 또는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교육청 고유사무임
○ 사단법인 대안교육기관연합회,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중검토 -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이라는 용어는 법률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주관적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치적 지향점 등에 따라 ‘중립’의 잣대가 변할 수 있는 점, 대안교육의 본질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적·사법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임 - 등록취소 요건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교육의 획일성 추구로 인한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끊임없는 민원과 고발 등이 유발될 것임 - 국가로부터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나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경제적 검열에 해당하고, 이미 등록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경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논리상 부적절함 - 현행법으로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시에 점검에 나설 경우 행정업무의 증가 또는 기관간 상이한 기준 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고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투명성과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6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생략)	제6조(결격사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 ② (생략)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u>학부모 대표</u>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u>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u> ----- ----- -----.
<신설>	제2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4조(과태료) ① ----- ----- <u>500만원</u> ----- -----.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기존 자연인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원까지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또는 운영하려는 자가 결격사유⁷⁾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결격사유의 적용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원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에게 동일한 윤리·형사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결격사유 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결격사유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다만, 현재도 시·도교육청에서 결격사유 조회를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관계기관에의 공문 요청 등의 방식으로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한정하여 입법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안 제14조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임.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로, 학칙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현행법령은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음⁸⁾.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을 두는 제도와 유사하게, 지역 인사를 운영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려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부모·교원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 지역사회 인사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⁹⁾ 이는 재량사항으로 자문에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 대표는 대안교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견제적 역할을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구성 방식이 현행법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안 제22조의2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등이 대안교육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는 최근 일부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안 제24조는 등록사항 변경등록 미이행, 폐쇄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부과하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괄하여 5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과태료 수준(100만원)은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평생교육법」에서도 폐쇄신고 미이행,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⁰⁾, 개정안의 과태료 상향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안 제6조 관련>
○ 교육부: 이견없음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그 소속 임원을 포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
○ 전남교육청: 일부수정 - 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시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하고 있으므로 제2항 신설은 불필요하다 판단됨 - 다만, 제7조에 따라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운영자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정기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정

10)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사단법인 대안교육기관연합회,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중검토 - 현행법 제6조 제1항에 명확한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사실조사’와 ‘신원조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 규제 및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대안교육 운영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의지를 꺾는 등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안 제14조 관련>
○ 교육부: 이견없음 - 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에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안교육기관 제도의 특성상, 주요 운영 주체인 교원과 학부모 중심의 긴밀한 결속이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확보해야 할 ‘자율성’과 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책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 존재
○ 사단법인 대안교육기관연합회,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중검토 - 대안교육기관은 특정 교육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외부인사가 운영위원회에 포함될 경우 대안교육의 핵심인 ‘설립 철학’과 ‘정체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고, 산간벽지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의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함
<안 제22조의2 및 제24조 관련>
○ 교육부: 일부 수정 - 동일·유사 명칭 사용 금지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 여부를 명확히 식별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등록제 실효성 담보를 위한 조치로서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 존재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변경등록 없이 기관 운영, 시정명령 미이행, 동일·유사 명칭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한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교육청: 일부수정 (전남교육청) - 무분별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정착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동의함. - 다만,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중 법적으로 등록불가 시설이거나 교육철학과 대안교육과정없이 입시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대안교육시설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함에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느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 혼란과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업무담당자 간 분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대안교육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이라는 모호성으로 과태료 부과 시 이의제기 등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동일 명칭만을 금지하도록 일부 수정

(대구교육청)

- 미등록기관이 대안교육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사명칭’ 대신 ‘동일명칭’으로 기준을 명확화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범위를 ‘해당 교육청 관할 내’로 구체화하여 관할지역 내 사칭 사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사단법인 대안교육기관연합회,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중검토

- 현행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교육기관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은 이중조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제재는 등록하지 못한 소규모 교육 공동체나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시도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압박임
-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대안교육기관을 잠재적 위법집단으로 간주하여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